

# 부설주차장 (야간·전일) 이용 서약서

위 치 : 포스코센터 부설주차장(테헤란로 440)

부설주차장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는 강남구청장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)과 부설주차장 소유주(이하 “소유주”라 한다)가 개방하는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서약서는 “이용자”가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방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의무)** ① “이용자”는 “소유주”가 약정기간 동안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방식으로 개방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한다.

② “이용자”는 “소유주”가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야간·전일 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③ “운영자”는 “소유주”가 “이용자”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·배정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한다.

**제3조 (부설주차장 개방시간)** ①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- ▶ 평 일 : 18시30분부터 다음날 09시까지
- ▶ 주말·공휴일 : 24시간

②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 개방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.

**제4조 (이용기간)** 야간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3개월로 하되, 수시배정의 경우 해당 분기 잔여기일만 사용하며, “소유주” 또는 “이용자”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.

**제5조 (주차요금 및 징수)** ①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및 징수는 「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협약서」 및 「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」에 따른다.

② “이용자”는 “운영자”가 지정하는 계좌 또는 결제방식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한다.

**제6조 (부설주차장 이용 시 준수사항)** “이용자”는 “소유주”가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“이용자”는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“소유주”는 이용시간 이후 출차 된 “이용자”의 차량에 대해 “소유주”가 설정한 주차장 요금 징수 기준에 따라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2.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“이용자”의 차량에 대해 “운영자”는 공영주차장·건인차량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인비용·보관비용(주차요금) 등 모든 비용은 “이용자”가 부담한다.

3. “이용자”는 부설주차장 출입 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“소유주”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.
4. “이용자”는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.
5. 별도의 야간 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 내 주차 시 발생하는 “이용자”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“소유주”와 “운영자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6. “이용자”는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7. “이용자”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,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)** “이용자”가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“소유주”가 이 사실을 “운영자”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“이용자”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. 다만, 3회 이상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“이용자”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.

**제8조 (민·형사상 책임 등)**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“이용자”에게 있으며, “소유주”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“소유주”의 귀책사유가 없는 차량의 피해
2.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
3. “이용자”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
4. 서약한 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및 비용

**제9조 (기타)** 이 서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.

**제10조 (서약의 효력 등)** ① 이 서약의 효력은 “이용자”가 부설주차장 최초 사용 시작일 부터 발생하고 서약한 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·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2021. . .

차량번호 : \_\_\_\_\_ 연 락 처 : \_\_\_\_\_

주 소 : \_\_\_\_\_

성 명 : \_\_\_\_\_ (인)

강남구청장(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) 귀하